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227
----------	------

2025. 1. 16.  
총무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 8.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1. 8.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 16.) 상정,  
“원안의결”

## 2. 제안 요지

### 가. 제안 이유

-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성격의 일부 조항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 규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024년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

### 나. 주요 내용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 3. 검토 결과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양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따른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